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5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손명수 · 한민수 · 조인철

김한규 · 정태호 · 김원이

이연희 · 문정복 · 박용갑

이훈기 • 박 정 • 이건태

김현정 • 이기헌 • 정준호

김선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반복적 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 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 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
-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스토킹범죄 치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 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u>해당하는</u>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u> <신 설></u>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
<u><신 설></u>	제18조의2(스토킹범죄 치사) 스토
	킹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